【퇴직연금정기예금】 특약

제1조 약관의 적용

퇴직연금 정기예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한다)은 이 약관과 "예금거래기 본약관", "거치식예금약관" 및 "거래예금별 개별약관"을 함께 적용합니다.

제2조 가입대상

이 예금 가입대상은 퇴직연금 계약에 근거하여 적립금 운용을 하고자하는 자로 합니다.

제3조 예금의 종류

- 이 예금의 종류은 정기예금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2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.
- 1. 고정금리형 예금가입일 및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을 만기시까지 적용
- 2. 변동금리형 예금가입일에 선택한 회전기간(3개월, 1년)에 따라 매 회전기간마다 변경된 이율을 적용

제4조 계약기간

- ① 제3조 제1호 예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, 6개월, 1년, 2년, 3년, 5년 또는 31일 이상 5년 이내에서 일수 지정가능하며, 계약기간은 중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.
- ② 제3조 제2호 예금의 계약기간 및 회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 계약기간 및 회전기간은 중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.

계약기간	회전기간
1년	3개월
3년	1년
5년	1년

제5조 가입금액

가입금액은 1원 이상으로 합니다.

제6조 재 예 치

- ① 이 예금의 만기일에 거래처의 별도 해지신청이 없으면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 금액으로 하여 당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재예치합니다.
-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은행휴무일인 경우에는 해당일에 이은 첫 영업일을,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재예치일로 합니다.

제7조 이율의 적용

고정금리형

- ① 제3조 제1호 예금의 이율은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합니다.
- ② 제3조 제1호 예금의 대해 만기일 전 거래처의 예금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 율을 적용합니다.

변동금리형

- ③ 제3조 제2호 예금의 이율은 예금가입일(재예치일) 또는 매 회전기간이 경과하는 달의 응당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을 변동하여 적용합니다.
- ④ 제3조 제2호의 예금을 최초 회전기간 경과전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예금 가입일(재예치일)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가입일 (재예치일)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.
- ⑤ 제3조 제2호의 예금을 최초 회전기간 경과 후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매 회전기간 단위로 위 제③호의 이율을 적용하되, 최종이율 결정일 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회전기간 미만일수에 대하여는 최종이율 결정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.

제8조 중도인출

- 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인출이 가능합니다. 다만, 다음의 경우는 분할인출 횟수를 예외 적용합니다.
- 1.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지급을 위한 경우에는 분할인출 횟수에

제한이 없습니다.

- 2.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에는 분할인출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.
- 3.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경우 가입자별로 3회 이내에서 분할인출이 가능합니다.

제9조 특별중도해지
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일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않고 예금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경과기간별 고시이율을 적용합니다. 다만,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1개월 미만경과시에는 1개월 고시금리를 적용합니다.

- 1. 퇴직 등 급여 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- 2.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- 3. 예금주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
- 4. 그 밖에 천재, 사변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
- 5. 가입플랜 변경을 위해 해지하는 경우 단, 해지와 동시에 해지원리금 이상으로 이 예금에 재가입하는 경우 에만 해당

제10조 제한사항

이 예금은 담보제공, 질권설정 및 양수도가 불가하며 세금우대저축 및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.

제11조 통장의 발급

이 예금은 통장을 발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
부 칙(2011. 4. 26)

이 특약 제4조 1항에서 추가된 계약기간은 2011년 4월 26일 이후 신규가입분부터 적용합니다.